

플랫폼·프리랜서 노동자 관련
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

2023. 1. 19.
입법예고

1 주요 개정 내용

국세기본법 시행령

□ 조세불복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(국기령 §48의2③)

현 행	개 정 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□ 조세불복 시 국선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 기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(소득·재산 기준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- 재산가액 5억원 이하○ (제외 기준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상속세, 증여세,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청구는 제외-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는 제외○ (청구세액 기준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□ 청구세액 기준 완화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(좌 동)-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

〈개정이유〉 불복과정에서 영세납세자 권익보호 강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국세징수법 시행령

□ 미납국세 열람 요건 등 규정(국징령 §97)

< 법 개정내용(국징법 §109) >

□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

-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*하고, 열람 장소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

*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</p> <p>① (열람권자)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희망자</p> <p>② (열람대상)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</p> <p>③ (열람절차)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</p> <p>i) 열람기간: 임대차계약 전까지 열람 가능</p> <p>ii) 열람요건: 임대인 동의 필요</p> <p>iii) 열람기관: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□ 임차인의 열람권 확대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○ (좌 동)</p> <p>③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한 예외 신설 등</p> <p>i) 열람기간: 임대차 계약일 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 가능</p> <p>ii) 동의 요건 예외 신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원칙)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신청 가능 ▪ (예외) 보증금이 1,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<p>iii) 열람기관: 전국 세무서</p> <p>iv) 통지의무: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</p>

<개정이유>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

<적용시기> '23.4.1. 이후 열람신청 하는 분부터 적용

소득세법 시행령

식대 비과세 조문 정비 등(소득령 §17의2, §19)

< 법 개정내용(소득법 §12) >

-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식사대 등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매월 지급받는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(23.1.1 시행)
-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
 - 월 10만원 →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식사대 등의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○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	<input type="checkbox"/> 조문 정비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10px 0;"> } <삭 제> </div>
<input type="checkbox"/>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비과세 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○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	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한도 상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

<개정이유> 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입법 등 반영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□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(소득령 §40의2)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
<p>□ 연금계좌 납입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금저축 + 퇴직연금 : 연간 1,800만원 ○ 추가납입 가능 - ISA*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*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조특법§91의18) 	<p>□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추가납입 항목 신설 - (좌 동) -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주택(종전주택)을 팔고 종전주택보다 가액이 낮은 주택(신규주택)을 취득한 경우 그 차액(1억원 한도) 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80%;">내 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상자</td> <td>부부 중 1명 60세 이상 & 부부 합산 1주택자* <small>* 종전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, 신규주택을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 6개월 내에 취득한 경우 포함</small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상주택</td> <td>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 <small>*종전주택 기준</small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납입금액</td> <td>종전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주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<small>* 1억원 한도(누적 기준)</small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납입기간</td> <td>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후관리</td> <td>종전주택보다 큰 가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(5년간 사후관리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내 용	대상자	부부 중 1명 60세 이상 & 부부 합산 1주택자* <small>* 종전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, 신규주택을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 6개월 내에 취득한 경우 포함</small>	대상주택	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 <small>*종전주택 기준</small>	납입금액	종전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주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<small>* 1억원 한도(누적 기준)</small>	납입기간	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	사후관리	종전주택보다 큰 가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(5년간 사후관리)
구 분	내 용												
대상자	부부 중 1명 60세 이상 & 부부 합산 1주택자* <small>* 종전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, 신규주택을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 6개월 내에 취득한 경우 포함</small>												
대상주택	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 <small>*종전주택 기준</small>												
납입금액	종전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주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<small>* 1억원 한도(누적 기준)</small>												
납입기간	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												
사후관리	종전주택보다 큰 가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(5년간 사후관리)												

※ 「'22년 세제개편안」에서 既 발표('22.7.21.)

〈**개정이유**〉 노후소득 보장 강화

〈**적용시기**〉 '23.7.1.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(소득령 §118의6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제율)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% 세액공제 ○ (공제대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본인) 대학(원) 학비,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- (취학전 아동) 유치원·어린이집 수업료, 학원비 등 - (초중고·대학생) 수업료, 교재비, 입학금 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 대상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대학입학전형료</p>

※ 「'22년 세제개편안」에서 既 발표('22.7.21.)

<개정이유> 교육비 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□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(소득령 §143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농업·임업 및 어업, 광업, 도매 및 소매업, 주택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○ 3천6백만원 미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, 수도·하수·폐기물처리·원료재생업, 건설업, 운수업 및 창고업, 정보통신업, 금융 및 보험업, 상품중개업 ○ 2천4백만원 미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부동산 임대업, 부동산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·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, 가구내 고용활동 	<p>□ 인적용역 업종의 수입금액 조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인적용역*은 수입금액 기준을 3천6백만원**으로 상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퀵서비스배달원, 대리운전기사 등 ** 현재 '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'에 포함되어 있음

〈개정이유〉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세부담 완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□ 간이과세자 관련 조문 정비(소득령 §208의2, §211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재화·용역을 공급받을 시 적격 증명서류* 수취 의무 예외 거래</p> <p>* (세금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)</p> <p>○ 거래상대방이 읍·면지역 소재 <u>간이과세자인 경우*</u></p> <p>*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에 한함</p> <p>○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, 금융·보험 용역을 제공 받은 경우 등</p> <p>□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의무</p> <p>○ <u>간이과세자가</u> 부가세 과세 재화·용역 공급시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</p>	<p>□ 적격 증명서류 수취 의무 예외 거래 범위 조정</p> <p>○ <u>간이과세자 중 ①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 미만이거나 ②신규 사업자</u>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□ 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변경</p> <p>○ <u>간이과세자 중 ①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 미만이거나 ②신규 사업자</u></p>

<개정이유> 간이과세자 범위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□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 및 방법 규정

(소득령 §212의4, 법인령 §164의2 신설)

— < 법 개정내용(소득법 §163의3, 법인법 §121의2 신설) > —

□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

- 공급자가 면세 재화·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
- 발행대상, 방법 및 발행 절차 등 시행령 위임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행대상 및 방법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발행대상) 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 ○ (발행절차) ①신청인은 과세기간(법인: 사업연도)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거래사실확인 신청 ②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서류 송부(7일내) ③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여부 확인 및 통지(신청일 다음달 말일까지) ④신청인은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매입자발행 계산서 발행

<개정이유>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

<적용시기> '23.7.1.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(소득령 §214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 비과세 소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,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○ 병급여,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 급여, 배상·보상금 등 ○ 실업급여, 육아휴직급여,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○ 식사 또는 식사대 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출 면제대상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삭 제></p>

<개정이유> 비과세소득 지급 현황 파악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

□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(소득령 §216의3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제출기관) 소득·세액공제*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자 * 의료비, 보험료, 연금계좌 납입액 등 ○ (제출항목) 연금계좌 납입액,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 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출범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</p>

<개정이유> 납세자 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

소비자 상대업종 추가(소득령 별표 3의2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소비자 상대업종* *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등 부여 ○ 소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97개 업종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업종 추가 ○ (좌 동) ○ 앰블런스 서비스업, 낚시어선업, 스타디카페 추가

<개정이유> 소득과약 및 세원양성화 제고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재화·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(소득령 별표 3의3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*대상</p> <p>*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</p> <p>① 변호사 등 전문직</p> <p>② 병·의원, 약사업, 수의사업 등</p> <p>③ 일반교습학원, 외국어학원 등</p> <p>④ 가구소매업, 전기용품·조명장치 소매업,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도·소매업</p> <p>⑤ 전세버스 운송업 등 운수업</p> <p>⑥ 골프장운영업,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</p> <p>※ 전체 112개 업종</p>	<p>□ 의무발행대상 확대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○ 8개 업종 추가*</p> <p>* ①백화점, ②대형마트, ③체인화편의점, ④기타 대형 종합소매업, ⑤서적,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, ⑥곡물,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, ⑦육류 소매업, ⑧자동차 중개업</p> <p>○ 3개 업종 추가*</p> <p>* ①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(포장이사 이외), ②주차장 운영업, ③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</p> <p>○ 2개 업종 추가*</p> <p>* ①통신장비 수리업, ②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</p> <p>※ 전체 125개 업종(13개 업종 추가)</p>

<개정이유> 소득과약 및 세원양성화 제고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재화·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(소득령 §155의3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* 임대기간</p> <p>*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 면제</p> <p>○ 상생임대차계약*에 따른 임대기간: 2년 이상</p> <p>* 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% 이하 ② 주택 매수 후 체결 ③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계약 제외 ④ '21.12.20~'24.12.31. 체결</p> <p>○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: 1년 6개월 이상</p> <p>□ 임대기간 계산 특례</p> <p>○ 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간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p>○ (좌 동)</p> <p>□ 특례사유 추가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○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계약과 신규계약 임대기간 합산</p> <p>*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 후 종전계약보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춰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 체결하는 경우 등</p>

<개정이유> 상생임대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□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

(§167의3①12의2, §167의4③6의2, §167의10①12의2, §167의11①12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○ 장기임대주택, 장기어린이집 ○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○ 장기사원용 주택 ○ 상속주택, 문화재주택 ○ 동거분양, 혼인, 취학, 근무,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○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'22.5.10.부터 '23.5.9.까지 양도하는 주택 	<p>□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중과배제 1년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'22.5.10.부터 '24.5.9.까지 양도하는 주택

〈개정이유〉 주택시장 연착륙 지원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□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

< 법 개정내용(상증법 §18의3) >

□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

- (공제한도 확대) 20억원 → 30억원
- (공제배제 신설) 피상속인·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·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(사전)·추징(사후)
 - 영농상속공제가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

① 피상속인 요건 강화(상증령 §16②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영농상속공제* 피상속인 요건 : ❶ & ❷ 충족</p> <p>* 농업·임업 및 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을 공제</p> <p>❶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하여 직접 영농(농업, 임업, 어업)에 종사</p> <p>❷ 농지·초지·산림지 소재 시·군·구 또는 해당 농지 등 으로부터 30km 이내 거주</p>	<p>□ 피상속인 요건 강화</p> <p>❶ 2년 → 10년</p> <p>❷ (좌 동)</p>

〈개정이유〉 영농상속공제 실효성 제고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□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태아 관련 증명서류 제출 신설(상증령 §18)

< 법 개정내용(상증법 §20) >

- 상속세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
- 태아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□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<p>□ 제출 시기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

<개정이유> 인적공제 제도 합리화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□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명확화(상증령 §24①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등기·등록재산의 취득시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등기·등록일 	<p>□ 취득시기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등기·등록 접수일

<개정이유>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
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-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대상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
완화(종부세령 §4의2①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종부세 주택 수 특례* 적용 되는 일시적 2주택 요건 *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○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	<input type="checkbox"/> 일시적 2주택 기간 확대 ○ 2년 → 3년

<개정이유> 일시적 2주택자 부담 경감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<특례규정> 영 시행일 전 일시적 2주택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

□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
(종부세령 §4의2③2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종부세 주택 수 특례*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요건 (①, ② 모두 충족) *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</p> <p>① 공시가격 3억원 이하</p> <p>②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(군 제외)·특별자치시(읍·면 제외) 아닌 지역</p>	<p>□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</p> <p>① (좌 동)</p> <p>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(군 제외)·특별자치시(읍·면 제외) 아닌 지역 - 인구감소지역*과 접경지역**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*** <p>*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§2 **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§2 *** 강화군·웅진군·연천군</p>

〈개정이유〉 국가균형발전 지원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- 전자세금계산서(전자계산서) 발급의무 강화
(부가령 §68, 소득령 §211의2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전자세금계산서(전자계산서) 의무발급대상 및 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상)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(수입금액) 합계액이 2억원 이상*인 개인사업자 <li style="margin-left: 40px;">* '23.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<li style="margin-left: 40px;">※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(총수입금액)과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(전자계산서) 의무발급 ○ (기간) 당해연도 7.1. 부터 다음연도 6.30. 까지 	<p>□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상)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(수입금액)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○ (기간) 당해연도 7.1. 부터 계속하여 발급

〈개정이유〉 소득과약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

〈적용시기〉

- ① (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확대) '24.7.1.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- ② (의무발급 기간 연장) '23.7.1. 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(종전 의무발급대상 사업자 포함)부터 적용

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(부가령 §71의2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*</p> <p>* 공급자가 재화·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확인하에 매입자가 계산서 발행</p> <p>○ (신청 기한) 해당 재화·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</p> <p>○ (대상) 거래 건당 10만원</p>	<p>□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확인 신청 대상 거래 확대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○ (대상) 거래 건당 5만원</p>

〈개정이유〉 납세자 권익 보호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재화·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
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청년 연령범위 확대(조특령 §11의2 등)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청년 연령범위</p> <p>○ 청년범위: 15 ~ 29세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내용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항(영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연구개발특구 입주 감면</td> <td>§11의2⑤</td> </tr> <tr> <td>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</td> <td>§61⑥</td> </tr> <tr> <td>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</td> <td>§99의8⑤</td> </tr> <tr> <td>투자·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</td> <td>§100의32⑫</td> </tr> <tr> <td>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</td> <td>§116의14④</td> </tr> <tr> <td>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</td> <td>§116의15⑦</td> </tr> <tr> <td>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감면</td> <td>§116의21⑥</td> </tr> <tr> <td>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</td> <td>§116의25⑤</td> </tr> <tr> <td>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</td> <td>§116의26⑥</td> </tr> <tr> <td>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</td> <td>§116의27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청년범위: 15 ~ 34세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내용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항(영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</td> <td>§5①</td> </tr> <tr> <td>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</td> <td>§27①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내용	조항(영)	연구개발특구 입주 감면	§11의2⑤	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	§61⑥	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	§99의8⑤	투자·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	§100의32⑫	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	§116의14④	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	§116의15⑦	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감면	§116의21⑥	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	§116의25⑤	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	§116의26⑥	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	§116의27⑥	내용	조항(영)	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	§5①	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	§27①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청년 연령범위 상한 상향</p> <p>○ 청년범위: 15 ~ 34세</p> <p>○ (좌 동)</p>
내용	조항(영)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개발특구 입주 감면	§11의2⑤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	§61⑥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	§99의8⑤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투자·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	§100의32⑫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	§116의14④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	§116의15⑦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감면	§116의21⑥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	§116의25⑤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	§116의26⑥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	§116의27⑥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내용	조항(영)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	§5①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	§27①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〈개정이유〉 청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□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 규정 등
(조특령 §22의10)

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25의6) >

-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(OTT)를 통해 제공된 영상콘텐츠 추가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대상</p> <p>① (방송프로그램) 교양·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, 애니메이션 등</p> <p>② (영화) 영화상영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연속 상영된 영화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□ OTT 콘텐츠 범위 구체화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 (좌 동)</p> <p>③ (OTT 콘텐츠)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(OTT)를 통해 제공되고, 등급분류*를 받은 비디오물</p> <p style="font-size: small;">*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급분류(\$50) 및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등급분류(\$50의2)</p> <p>□ 영상콘텐츠가 ①~③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받은 경우, 동일 내용의 영상콘텐츠에 공제 재적용 불가</p>

<개정이유>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지출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부터 적용

□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
(조특령 §80의3⑤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공제부금에 대한 과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폐업·해산 - 가입자 사망 - 만 60세 이상이며, 10년 이상 납입자의 지급 청구 등 ○ 임의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 (15%)으로 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예외)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천재·지변의 발생 ▪ 해외이주 ▪ 3월 이상 입원치료 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p>□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 추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(좌 동) - (좌 동) ▪ 사회재난지역*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 <p>* 「재난안전법」 제66조①2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선포지역</p>

※ 「'22년 세제개편안」에서 既 발표('22.7.21.)

<개정이유>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 지원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

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재산 확대(조특령 §93의4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과세특례</p> <p>○ (운용재산) 예·적금, 펀드, 파생결합사채, 상장주식 등 <추 가></p> <p>○ (내용) 소득금액 200만원*까지 비과세, 초과분 9% 분리과세</p> <p>* 농어민·서민은 400만원</p>	<p>□ 운용재산 추가</p> <p>○ (좌 동)</p> <p>- 회사채 및 K-OTC* 주식 (중소·중견기업에 한정)</p> <p>*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·운영하는 비상장주식의 장외시장(자본시장법§286①)</p> <p>○ (좌 동)</p>

※ 「'23년 경제정책방향」에서 既 발표('22.12.21.)

<개정이유> 자금시장 여건 개선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

□ 청년도약계좌 이자·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(조특령 §93의8)

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91의22) >

- 소득 요건*을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시
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·배당소득 비과세(납입한도 연 840만원)
- * 총급여액 7,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,300만원 이하
- 연령 요건, 운용가능재산, 특별중도해지사유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□ 청년도약계좌 세부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가입 연령 요건) 19세 이상 34세 이하 [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(최대 6년) 제외] ○ (운용가능재산)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·적금, 국내상장주식 외에 추가되는 재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매조건부매수 계약으로 운용하는 채권·증권 -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상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- 계좌 내 상장주식을 통하여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 ○ (특별중도해지사유*) 감면세액 추징 배제되는 해지사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❶의 사유는 사유 발생 후 해지가 가능하며, ❷의 사유는 사유 발생 후 6개월 내로 해지 가능 ❶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 ❷ 천재지변, 가입자의 퇴직,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발생, 생애최초 주택* 구입 등 <p>*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,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</p>

<개정이유> 청년 자산형성 지원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(조특령 §95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월세 세액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상) 총급여 7천만원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)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○ (공제율) 월세액의 15%/17%* * 총급여 5,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자 ○ (공제 한도) 750만원 ○ (대상 주택)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	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기준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

※ 「'22년 세제개편안」에서 既 발표('22.7.21.)

〈개정이유〉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□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도시지역·수도권 예외 신설

(조특령 §99의4④)

< 법 개정내용(조특법§99의4) >

-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
- 농어촌주택 소재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□ 농어촌주택의 소재지가 될 수 없는 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구감소지역 및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모두 해당하는 도시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* <p>* 태안군, 영암·해남군</p>
<p>□ 농어촌주택의 소재지가 될 수 없는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천군, 용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유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	<p>□ 농어촌주택의 소재지가 될 수 없는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수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* <p>* 강화군, 연천군, 용진군</p>

<개정이유> 인구감소지역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접경지역 지원

<적용시기> (도시지역 제외) '23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(수도권 제외)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□ 근로·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

① 근로·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(조특령 별표11, 별표11의2)

<법 개정내용(조특법 §100의5, §100의29)>

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·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구원 재산가액 : 2억원 → 24억원 미만 * 50%감액 : 1.4억원 → 1.7억원 이상
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: 단독¹⁵⁰/홀벌이²⁶⁰/맞벌이³⁰⁰ → 165/285/330(만원) ○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: 70만원 → 80만원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산정표에 따라 소득구간별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	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·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

<개정이유> 저소득가구의 근로장려 및 소득 지원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② 동일가구 내 장려금 상계 규정 신설(조특령 §100의9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일 가구 내 중복신청으로 수급자가 변경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수급자 : 전액 환수 ○ 신규 수급자 : 전액 지급 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일 가구 내 장려금 상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규 수급자 : 차액 지급 * 환수 필요 시 기존수급자 환수

<개정이유> 납세자 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-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(조특령 §104의2)

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104의5) >

-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신설
(적용기간: '24.1.1. ~ '25.12.31.)
 - 적용대상 소규모사업자, 공제금액은 시행령으로 위임
 - * 연간 한도 300만원(세무·회계법인의 경우 600만원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세부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상 사업자)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 ○ (공제금액) 기재된 상용근로자 1인당 200원

<개정이유>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

2 추진일정

- '23.1.18.(수), 시행령 개정안 발표
- '23.1.19.(목)~2.3.(금), 입법예고
- '23.2.21.(화), 국무회의
- '23.2월말, 공포